

2024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2024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제도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4. 7. 23.(화)로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 지원대상: 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 | 지원규모: 500명 정도(선착순 지원)
- | 지원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gbwork.kr)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 **최초 10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2024년 7월 1일) - 최초 5시간 지원(월최대 25만원)
- 2 **급여 감소분 보상 : 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통상임금(기본급+고정급)-고용노동부 기준(통상임금 기준이 상이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준용)
- 3 **직장 및 주소는 사업기간내 유지**



| 제외대상

- ❶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고용노동부)
- ❷ 사업주로부터 단축근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 받는 자
- 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
- ❹ 기타 경상북도,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금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통상임금200만원초과~400만원이하근로자, 10시간 보전, 월최대50만원)

※ 사업주부담급여+육아기단축급여 10시간 단축분(고용노동부)+단축급여 미지급분 (10h보상 : 최대 50만원)

- ❶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 2024.12월): 최대 8개월분 지급
※ 단, 1개월 미만은 지원금 미지급 (예시 5.2~12.31일 경우: 7개월)
- ❷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금액(고용노동부)
+ 지급금액(부족분)
▶ 월급여 300만원 급여수령시: 225만원(사업주)+50만원(고용노동부)+25만원(경상북도)

신청방법

| 선정방법: 자격여부 및 신청완료자(구비서류 제출 완료*) 대상 사업비 소진시까지

- ▶ (1차 선정) 자격요건 충족 및 신청서류 완료순 선정
- ▶ (2차 선정) 1차 선정자 중 자격요건 유지자 선정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사용 기간 및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다축 별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해야 함

* 예)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 ~ 5시간까지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54-470-8592 / 8594